해운대 경동리인뷰2차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거주요건	재당첨제한
민영	비규제지역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자	없음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최초당첨자발표일 (2023.07.12)로부터 6개월이므로 이미 도과하였음.)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08.02.(금)	2024.08.07.(수)	2024.08.12.(월)	2024.08.14.(수)	2024.08.16.(금)

I 공통 유의사항

■ 청약신청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본 아파트는 계약취소주택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면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는 이미 준공된 아파트로서 현 상태 그대로 분양함에 따라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시설물의 설치 및 교체, 수선 등을 요구하실수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 세대에 대한 견본주택 운영이 종료되었으므로, 당사 현장방문 등으로 상품과 입지여건을 확인하시고 청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단, 당첨자 발표일 이후 당첨자에 한해서 당첨된 동호수를 오픈할 예정이오니, 세대 방문시 상품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에 임하며, 미 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 신청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운대 경동리인뷰2차 분양 상담 전화(1577-1542)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청약가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자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과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착오 신청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7.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이라 함)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특별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각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취소주택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O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부적격 당첨자)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2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 분양사무소에서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2018.01.31 부산광역시 출산장려정책인「아이.맘부산플랜」에 따라 건축(전문)위원회 (2019.12.16.)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공급 금액(옵션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 제외)의 5%를 잔금에서 인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 공급 청약 신청자 중 당첨 세대(예비입주자 포함) 에 한하여 공급되며, 이후 무순위, 선착순 계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이.맘 부산플랜」의 분양가 인하 혜택은 해당 세대의 최초 계약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분양권 전매 시에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Ⅱ 단지 유의사항

■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8.02.(금)**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4930046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6.22.(목)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3000257이므로,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입주자모집공고	특별공급 접수일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4.08.02.(금)	2024.08.07.(수)	2024.08.12.(월)	2024.08.14.(수)	2024.08.16.(금)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 ▪ www.해운대경동리인뷰2.com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남로 21 해운대구 우동 1565, 경동리인뷰2차**)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2023.07.12.)로부터 6개월간 적용되므로 현재 전매기한이 도과하였습니다.

Ⅲ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과 - 3661호(2024.07.3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65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6층, 지상 45층 4개동 총 632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1세대(특별공급1세대(다자녀가구1세대))
■ 입주시기 : **본 주택은 준공된 아파트로 금회 공급하는 세대의 입주시기는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대금 등 입주시 납부 의무가 있는 모든 금액에 대하여 완납 후 즉시 입주 가능**

■ **공급대상** **(단위 : ㎡)**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다자녀 가구	계
민영 주택	2024930046	01	84.9773A	84A	84.9773	35.5048	120.4821	55.9307	176.4128	11.3891	1	1	1
합 계											1	1	1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세대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외벽면적과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홀 등 아파트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외벽면적 제외)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건축물은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이 복합적으로 계획되어있는 건축물로 시설별 연면적을 기준으로 시설별 대지지분을 분할하였고, 아파트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아파트 전체 대지지분을 각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 현장 방문 등으로 주변 여건을 확인하고 계약에 임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아파트 공급에 관한 유의 사항중 표기되지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 공고문(2023.06.22.)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공급금액** **(단위 : 원)**

약식표기	동/라인	층	공급 세대	공급금액			계약금(20%)	잔금(8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84A	201-2003	20층	1	559,075,000	485,925,000	1,045,000,000	209,000,000	836,000,000

※ 상기 공급금액에는 사업주체가 해당주택을 취득 및 재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재취득비용, 이자, 세금, 관리비, 수수료)등을 포함시키지 않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분양가로 공급합니다.
※ 지정된 계약일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가능)
※ 분양대금은 계약금 20%, 잔금 80% 로 나누어 납부 하며, 잔금 80%는 실입주일 또는 키불출일 중 빠른 날짜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단, 잔금납부 마감일인 계약일로부터 60일 이후에는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연체료 부과 및 해지요건에 따릅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단위 : 원)**

구분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금 (20%)	잔금 (98%)
약식표기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84A	27,000,000	5,400,000	21,600,000

※ 발코니 확장 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하며, 해당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입주 시 개별납부)
※ 발코니 확장공사에 관한 유의사항은 최초 입주자 공고문(2023.06.22.)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공급대금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부산은행	113-2013-6815-06	우리자산신탁 이종근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하며,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201동 1403호 홍길동 → 2011403홍길동 / 201동 201호 홍길동 → 2010201홍길동)
※ 예금주 우리자산신탁(주)은 관리형토지신탁에 의한 수탁자로서 분양대금을 관리합니다.
※ 지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의 분양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셔야 하며,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 사업주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받으며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견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인지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공급계약은 효력이 상실, 해약 조치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니 납입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되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 및 계약체결에 관한 유의사항은 최초 입주자 공고문(2023.06.22.)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대금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비고
발코니 확장대금 납부계좌	부산은행	113-2013-6817-09	우리자산신탁 이종근	※ 무통장 입금시 의뢰인란에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의 성명 기재 요망 (예시 : 201동 1001호 홍길동의 경우 → 2011001홍길동)

※ 발코니 확장대금 납부에 관한 유의사항은 최초 입주자 공고문(2023.06.22.)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Ⅳ 특별공급

구분	내용
공급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다만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tr><td></td><td>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
<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
<tr><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
</tabl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td></tr>
<tr><td>무주택
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Ⅰ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td></tr>
</table>

Ⅳ-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Ⅴ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취소후재공급 → 주택명 및 주택형 등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08.12.(월) ~ 2024.08.21(수)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4.08.12.(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		무주택서약서	본인	-인터넷 청약(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특별공급신청자)무주택서약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 분양사무소에 비치 ,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본인발급용 필수) • 본인계약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시 인감도장을 서명으로 대체가능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 "전체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기록대조일 : 출생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02.)로 출입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단신부임 입증서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8항에 따라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등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직계존속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또는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본에 등재 한함)--> 존속의배우자유무 및 세대분리여부 확인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직계비속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자녀가 입양인 경우
		○	임신증빙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이외 서류인정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임신중인 경우/ 분양사무소 비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분양사무소에 비치
	○		인감증명서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본인발급용 필수)
	○		인감도장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생략
	○		신분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장		·서명 또는 날인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Ⅶ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당첨자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서류 제출	계약 체결
특별공급	• 일시 : 2024. 08. 12 (월) • 확인방법-한국부동산원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4. 08. 14.(수) (10:00~16:00) • 제출 방법 : 사업주체 사업장 방문 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남로 21 (주소 : 해운대구 우동 1565 해운대 경동리인뷰2차)	• 일시 : 2024. 08. 16.(금) (10:00~16:00) • 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남로 21 (주소 : 해운대구 우동 1565 해운대 경동리인뷰2차)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당첨자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시 개별서면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지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구비 사항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사전서류 미접수시 필수서류 구비)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자격 검증서류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 완료시 제외)
	○		인감증명서	- 용도에 「아파트계약용」 으로 직접 기재, 본인발급에 한함. **※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		계약금 입금증	- 견본주택에서는 수납불가,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	추가 개별통지서류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전자수입인지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	자금조달계획서	- 견본주택 비치
부적격 당첨 통보자		○	무주택 소명서류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 사항	○		인감증명서(계약자)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청약자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 계약 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		인감도장(계약자)	
	○		위임장(계약자)	
	○		신분증 및 인장(대리인)	

※ 2005.7.1일「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인감증명서 본인발급만 인정합니다.(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아파트 계약용으로 사용 불가)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Ⅷ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차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 및 제3조제1항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나. 임차주택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 임차주택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

IX 단지 여건 등

■ **입주예정일(잔금납부일) : 계약후 60일 이내. 단, 입주예정일(잔금납부일)전이라도 분양대금 완납 시 즉시 입주 가능**

■ **부대시설** : 독서실, 입주자공동시설, 관리지원센터, 입주자 공용창고, 작은도서관, 카페라운지, 어린이집, 경로당,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게스트룸

■ **기타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청약하시기 전에 본 주택의 금회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2023.06.22.)을 확인하시어 여러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시행수탁자","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입주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일정기간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본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전유부분 이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6. 사용검사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사용검사 전·후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7.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306.22.(목)공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에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11.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12. 당첨 발표 후 자격검증 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당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13.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떤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5.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6.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받은 자는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17.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공동으로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19.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20.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감리회사

구분	건축·토목·기계감리	전기	통신·소방감리
회사명	㈜ 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	㈜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부흥이앤씨
사업자번호	301-81-19298	301-81-36564	605-81-75358

■ 사업관계자

구분	매도인 겸 시행수탁사	시공사	시행위탁자
상호	우리자산신탁㈜	경동건설㈜	㈜아트만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 (역삼동, 삼정빌딩)	부산광역시 연제구 황령산로 599 (연산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1102호 (우동, 센텀리더스마크)
법인등록번호	110111-2003236	180111-0019728	180111-1159929

•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 (2023.06.2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청약홈 : applyhome.co.kr)

■ 분양관련 문의 및 분양사무실 위치 안내

• 분양사무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남로 21 해운대 경동리인뷰2차 입주지원센터**
• 분양문의 : ☎ 1577-1542 (평일 : 10:00 ~16:00, 주말,공휴일 및 점심시간(11:30~13:00제외/통화량이 많을 경우 전화연결이 지연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36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공동주택관리법」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공동주택관리법」제37조 및 제39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분		적용여부	비 고
건축부문 설계기준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열저항합계 기준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기밀 및 결로방지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적용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스보일러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고효율변압기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세대 및 공용부위 조명기구 고효율기자재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 관리형 토지신탁

※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아트만, 시행수탁자 우리자산신탁㈜ 및 시공사 경동건설㈜,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실질적 사업주체는 ㈜아트만이며,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① 지정된 분양수입금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대출금의 상환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③ 분양목적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 우리자산신탁㈜는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신탁계약에 따른 업무범위 및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일체 책임 및 의무는 실질적 사업주체인 시행위탁자 ㈜아트만이 부담한다.

④ 분양목적물은 시행위탁자 ㈜아트만과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 우리자산신탁㈜ 사이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우리자산신탁㈜가 공급하는 것이며, 신탁해지 또는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즉시 모든 공급계약에 대하여, 개별 공급계약에 따라 매수인(수분양자)에게 공급 대상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즉시 해당 공급계약에 대하여, 공급자이자 매도인으로서 시행수탁자 겸 매도인이 가지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등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기타 손해배상의무를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아니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시행위탁자 (주)아트만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승계)된다.

⑤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오시공, 미시공, 사용승인 전에 발생한 하자 포함)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 경동건설㈜가 부담한다.

⑥ 사업지 주변기반(예정)시설의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해당 주변기반(예정)시설 사업자의 사정 및 경제여건에 따라 변경되거나 지체 내지 철회될 수 있다.

⑦ 시행위탁자 ㈜아트만은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⑧ 본 관리형 토지신탁 내용은 본 모집공고 모든 내용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